

제11조 (불용품의 처리)

불용이 결정된 물품이 완전폐품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폐품처리하고 그 불용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은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폐기한다.

제12조 (수증)

기관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수증자는 즉시 수증물품 반입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6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목적)

본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이용자(수급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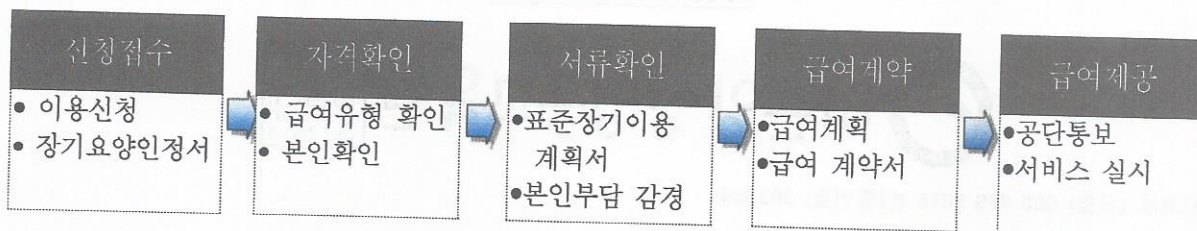
①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시설의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① 이용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이용자 집단생활의 건강관리 위한 전염성 질환 미보유자 입증과 관련하여 의료기 진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건강진단서 1부
- ⑤ 기타 해당 서류

제5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오프라인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팸플렛,현수막
기타	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홍보

제 7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할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보호자가 입소자 면회 시 면회 예절을 지켜야 할 의무

제5조 (퇴소 및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다른 입소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으로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임종 유류금품 처리)

- ①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
 1.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2.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직원이 임종을 모실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인도를 한다.
-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유류품등을 제고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시설장은 2일장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5.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 ③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어르신의 입소비 정산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2. 사망진단서,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4.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 입금 조치한다.

제 8 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변경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5.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7.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8.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별지)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1일3식 9,000원
간식비	1,000원
이 미용비	
기타	

<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 8%, 12%